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25호 2014. 5. 12.(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 2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27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
개정규칙 ----- 52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6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5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66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명: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5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558호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약식)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6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573호 공시송달 공고 ----- 6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581호 공시송달 공고 ----- 6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여 서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인천 서부경찰서·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하나센터 북부지부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지역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지역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제16조제4항제2호 중 “징수유예등”을 “징수유예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배분한”을 “교부한”으로 하고,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을 “구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하거나 예탁한”을 “예탁한”으로 한다.

제22조 중 “징수유예등을”을 “징수유예 등을”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를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유예등신청서”를 “징수유예 등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유예등을”을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24조 제목 중 “징수유예등의”를 “징수유예 등의”로 하고, 같은 V조 전단 및

후단 중 “일시에”를 각각 “한꺼번에”로 한다.

제25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담보를”을 “납세담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징수유예등을”을 각각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점유하는 자”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을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구·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유예등”을 “징수유예 등”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을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유예등에”를 “징수유예 등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u></p> <p>4. <u>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8장 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u></p> <p>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 ③ (생략)</p> <p>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징수유예등</u>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p> <p>3. (생략)</p> <p>제17조(공탁 등) ① <u>배분한</u>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p>	<p>제4조(세목)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및 제4절에 따른 재산분 및 종업원분)</u></p> <p><u><삭 제></u></p> <p>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징수유예 등</u> -----</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17조(<u>교부금전의 예탁 등</u>) ① <u>교부한</u>-----</p>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하거나 예탁한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구금고-----
-----. <단서 삭제>-----

② -----예탁한-----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
----- 징수유예 등을 -----
사람은-----
-----.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

징수유예 등 신청서-----

-----.

② ----- 징수유예 등을 -----

-----.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
는 자
- 5.·6. (생략)

제32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
원은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
· 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
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5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
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
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
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

-----.

- 1. (현행과 같음)
- 2. ----- 있는 사람
- 3. ----- 점유하는 사람
- 4. ----- 있
는 사람
- 5.·6. (현행과 같음)

제32조(참여자의 설정) ① -----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
족· 동거인이나 사무원 -----
-----.

② -----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구·동 주민
센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
-----.

제35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
부자) -----

----- 없는 사람으 -----

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
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
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
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
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
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사람을 -----.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

----- 징수유예 등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

----- 징수유예
등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하고 괄호안 “3천 원”을 “6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5조제3호(중전의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

저해율 V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제5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3천원”을 “6천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외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려는 자”를 “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율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제9조제1호 중 “받는 자”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부터 제4호 각 가목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소유권의 보존</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u><신 설></u></p> <p>2. <u>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u></p> <p>가. <u>지상권</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p> <p><u><단서 신설></u></p>	<p>제5조(세율) -----</p> <p>-----.</p> <p>1. <u>소유권의 보존 등기</u> :-----</p> <p>-----6천원-----</p> <p>6천원-----</p> <p>---</p> <p>2. <u>소유권의 이전 등기</u></p> <p>가. <u>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p> <p>나. <u>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p> <p>3. -----</p> <p>-----</p> <p>가. -----</p> <p>다만, <u>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합한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u></p> <p>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p>1. <u>면허를 받는 자</u>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p> <p>2. ~ 4. (생략)</p> <p>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생략)</p> <p>2. 건축물</p> <p>가. <u>법 제13조제3항</u>에 따른 골프장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p> <p>나. · 다. (생략)</p> <p>3. 주택</p> <p>가. <u>법 제13조제3항제1호</u>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p> <p>나. (생략)</p>	<p>제9조(비과세 신청) -----</p> <p>-----</p> <p>-----</p> <p>-----</p> <p>-----</p> <p>-----</p> <p>-----</p> <p>1. ----- <u>받는 사람</u>-----</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세율)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건축물</p> <p>가. <u>법 제13조제5항</u>-----</p> <p>-----</p> <p>-----</p> <p>-----</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p>3. 주택</p> <p>가. <u>법 제13조제5항</u>-----</p> <p>-----</p> <p>-----</p> <p>나.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선박</p> <p>가. <u>법 제13조제3항제5호</u>에 따른 고 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p> <p>나. (생략)</p> <p>제5장 <u>지방소득세(종업원분)</u></p>	<p>4. 선박</p> <p>가. <u>법 제13조제5항</u>----- -----</p> <p>나. (현행과 같음)</p> <p>제5장 <u>주민세(종업원분)</u></p>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1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문개정조례 부칙 제4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2.06.26. 조례 제1152호)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u>2013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른 법 또는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부칙(2012.06.26. 조례 제1152호)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u>2016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른 법 또는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을 “제증명”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증명등으로서”를 “제증명 등으로써”로, “2통이상”을 “2통 이상”으로, “제증명등을”을 “제증명 등을”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으로, “신고서등”을 “신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을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으로,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함으로서”를 “함으로써”로 한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공부열람”을 “공부 열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1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 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u>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u>」 제17조에 따른 <u>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u>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u>제증명등</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u>제증명등</u>으로서 동일한 것을 <u>2통이상</u>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u>제증명등을</u>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u>----- ----- ----- -----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u>제증명</u> ----- ----- -----.</p> <p>제2조(적용)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에 따른 <u>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u> 등 -- <u>따라</u>-----.</p> <p>제4조(기준) ① ----- -- <u>제증명 등으로써</u> ----- <u>2</u> <u>통 이상</u> ----- ----- <u>제증명</u> <u>등을</u> ----- ----- -----.</p>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방법) ① -----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 신고서 등-----.

----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

제증명 등----- 함으로써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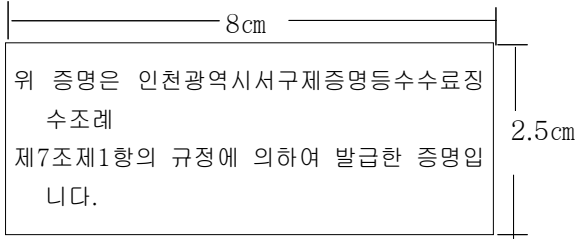
8. -----

----- 제증명 등

9. -----
----- 공부 열람-----

10. ~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0.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별표1] 제증명 수수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 10.생략 < 신설 >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1 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서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서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등)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서구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서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

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서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 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서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서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서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9조(지원 요청 등)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서구 지역본부장은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 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서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피해보상)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급)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

함한다)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5조제5항 관련)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p>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p>
--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위험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제한 표지(제7조제3항 관련)

210mm×297mm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사용가능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출입통제 표지(제7조제4항 관련)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1호 서식]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 2013.4.23] [법률 제11495호, 2012.10.22, 타법개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1-04 조례 제 52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진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진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발생 시 정보수집

2. 관내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의 업무 지원 및 상황관리

3. 인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지

원요청

4. 그 밖의 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건축물·가스·통신·전력·도로·상수도·하수도·철도·공항·항만 등 지진 피해분야 부서 및 관계기관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단장이 소집·운영한다.

제4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군·구에서 등록·관리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지역본부장은 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구 지원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군·구 지역본부장 또는 지진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물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인근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관리운영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과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

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종합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의로의 전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1994호, 2013.8.6, 타법개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8.6>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1년” 을 “3개월”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8만원” 을 “8만원(시비 5만원 포함)”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 을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u>1년</u>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제3조(지원대상) ----- ----- ----- ----- <u>3개월</u> ----- ----- ----- -----</p>
<p>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u>8만원</u> 지급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u>30만원</u>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3. (생략) 4. <u>기타</u>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8만원(시비 5만원 포함)</u> ----- 2. ----- ----- <u>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u>----- -----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 -----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 <u>시행에</u>----- -----</p>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27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소재지등”을 “소재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재지등”을 “소재지 등”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각각 “지체 없이”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재공매 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제5호 중 “인감증명”을 각각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72-13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5. 0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5-0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가좌동 602-87	건지로 72-13	2009-08-28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	인천 서구 가좌동 602-88	건지로 72-15	2009-08-28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3	인천 서구 검암동 614-5	승학로512번길 18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경서동 976-129	옥빛로15번길 4	2013-07-30	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경서동 976-93	옥빛로7번길 7	2013-07-30	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경서동 976-99	옥빛로7번길 6	2013-07-30	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4-6	도담5로 77	2012-10-25	도담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73-3	고산후로 244-1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9	드림로 405-91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50-1	한들2로 4-1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49-2	한들2로 6-5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26-6	고산후로174번길 34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6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5.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원창로64번길 16-10외 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5-0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원창동 156-2, 156-4	원창로64번길 16-10	2014-05-01	건축물 말소	
2	인천 서구 석남동 223-249	건지로97번길 54	2014-04-28	건축물 말소	
3	인천 서구 심곡동 124-4, 124-9, 124-22	봉수대로 704	2014-05-07	건축물 말소	
4	인천 서구 오류동 240	단봉로11-1	2014-05-09	건축물 말소	
5	인천 서구 당하동 1084-1	청마로 53	2014-05-09	건축물 말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66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명: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79호(2013.09.0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시설명 : 주차장, 사업명 : 신현동 133-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560-4852) 및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5.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신현동 133-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A = 346m², 주차면수 =9면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013. 09. 05 ~ 2014. 04. 30(기정)
2013. 09. 05 ~ 2015. 10. 31(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아래와 같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신현동	133-1	대	346	346	윤인상	인천 서구 가좌동 30-2 진주아파트 6동502호	

●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1	신현동	133-1	경작물	과, 상추, 고추	㎡	52.0	윤인상	인천 서구 가좌동 30-2 진주아파트 6동502호	
	-2	"	"	경작물	상추, 썩, 배추	㎡	33.0	"	"	
	-3	"	"	경작물	깨	㎡	5.0	"	"	
	-4	"	"	경작물	상추, 고추	㎡	21.0	"	"	
	-5	"	"	경작물	깨	㎡	72.0	"	"	
	-6	"	"	경작물	고추	㎡	56.0	"	"	
	-7	"	"	경작물	깨, 상추, 고추	㎡	40.0	"	"	
	-8	"	"	경작물	상추, 과	㎡	40.0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558호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28,986.2㎡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 환지처분일
- 시행자 : (가칭)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조합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4. 5. 7. ~ 2014. 6. 3.
- 장소 : 서구청 환경보전과,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 공람방법 및 시간 : 공람장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 5. 21(수) 14:00
- 장소 : 인천광역시서구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 제출내용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

※ 환경영향평가서 요약서 및 공고문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환경보전과 (☎ 032-560-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573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14 05. 12. ~ 2014. 05. 27.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032-560-4830)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사**	인천 서구 경서동	경명대로406번길*****	2014.04.18	2012.10.25	경명대로 시작지점부터 4,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581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14 05. 12. ~ 2014. 05. 27.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032-560-4830)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노**	인천 서구 검암동	승학로506번안길*****	2014-04-25	2009-09-22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서**	인천 서구 검암동	승학로506번안길*****	2014-04-25	2009-09-22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김**	인천 서구 검암동	승학로506번안길*****	2014-04-25	2009-09-22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박**	인천 서구 검암동	승학로506번안길*****	2014-04-25	2009-09-22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